

가칭) 경북문화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2017. 6

提 出 文

경상북도지사 귀하

貴 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가칭) 경북문화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의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06

財團法人 韓國産業關係研究院

理 事 長 林 昇 澤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4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5

제2장 기본현황 / 9

제1절 인문·지리적 현황	9
제2절 경제적 현황	13
제3절 재정현황	15

제3장 지역문화재단의 실태분석 / 19

제1절 지역문화재단의 개요	19
제2절 지역문화재단 현황	22
제3절 관련법규 검토	33

제4장 경북 지역문화 현황 및 실태 / 57

제1절 경상북도 문화정책 (경북 문화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57
제2절 문화시설 현황 및 실태	60
제3절 문화예술 현황	66
제4절 도민 문화향유 및 문화의식	87

제5장 경북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 91

제1절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91
제2절 설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	95
제3절 경북문화재단의 역할	100

제6장	경북문화재단 설립방안 / 107	
제1절	사업적정성 분석	107
제2절	경북문화재단 설립안 검토	112
제3절	조직 및 인력 검토	123
제4절	예산규모 검토	133
제5절	설립안 검토결과	147
제7장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 155	
제1절	문화재단의 운영방향	155
제2절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	156
부록.	문화재단 설립절차 / 159	


표 차례

<표 2-1>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10
<표 2-2> 연도별 인구 및 세대수 추이	11
<표 2-3> 경상북도 행정구역 현황	12
<표 2-4> 지역총생산(당해년 가격) 추이	13
<표 2-5> 경상북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14
<표 2-6> 재정자립도 현황	15
<표 2-7> 재정자주도 현황	15
<표 2-8> 통합재정정보 현황	16
<표 3-1> 지역문화재단 설립현황	22
<표 3-2> 광역문화재단 설립현황	23
<표 3-3> 도 단위 광역문화재단 업무영역	25
<표 4-1> 2015년 대비 2016년 경북 문화기반시설 현황	60
<표 4-2> 2016년 경북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현황	61
<표 4-3> 2016년 도내 시군별 인구 1만명당 문화기반시설 현황	62
<표 4-4> 전국 대비 경상북도 문화기반시설 비율	63
<표 4-5>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대비 경상북도 문화기반시설 비율	63
<표 4-6> 2016년 전국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현황	64
<표 4-7> 2016년 인구 1백만명당 문화기반시설 현황	65
<표 4-8> 경상북도 문화예술 추진기반 현황	66
<표 4-9>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 현황	84
<표 4-10> 경북 문화예술 활동 건수 및 비율	85
<표 4-11> 경상북도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현황	86
<표 6-1> 도 단위 광역문화재단 사업영역	107
<표 6-2> 경북문화재단 검토대상사업	108
<표 6-3> 경북문화재단 사업영역 및 주요세부사업	111
<표 6-4>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통합 검토	115
<표 6-5>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통합 검토	116


<표 6-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통합 검토	117
<표 6-7> 한국국학진흥원 통합 검토	118
<표 6-8> 경상북도관광공사 통합 검토	119
<표 6-9> 문화재단사업 통합기관 분석결과	120
<표 6-10> 제1안 추진 시 인력운영계획	126
<표 6-11> 제2안 추진 시 인력운영계획	129
<표 6-12> 제3안 추진 시 인력운영계획	132
<표 6-13> 현행 예산규모(제1안)	133
<표 6-14> 제1안 추진 시 인건비 예산	134
<표 6-15> 제1안 추진 시 운영 및 사업예산	135
<표 6-16> 제1안 추진 시 예산 집계표	135
<표 6-17> 제1안 추진 시 예산 비교분석	136
<표 6-18> 현행 예산규모(제2안)	137
<표 6-19> 제2안 추진 시 인건비	138
<표 6-20> 제2안 추진 시 운영 및 사업예산	139
<표 6-21> 제2안 추진 시 예산 집계표	140
<표 6-22> 제2안 추진 시 예산 비교분석	141
<표 6-23> 현행 예산규모(제3안)	142
<표 6-24> 제3안 추진 시 인건비	143
<표 6-25> 제3안 추진 시 운영 및 사업예산	144
<표 6-26> 제3안 추진 시 예산 집계표	145
<표 6-27> 제3안 추진 시 예산 비교분석	146
<표 6-28> 설립안별 비교검토	149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5
<그림 2-1> 경상북도 위치도	9
<그림 2-2> 연도별 인구 및 세대수 추이	11
<그림 6-1> 제1안 추진 시 조직구성	125
<그림 6-2> 제2안 추진 시 조직구성	128
<그림 6-3> 제3안 추진 시 조직구성	131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창의 감성이 중시되는 문화의 시대를 맞아 문화예술진흥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타 시도의 운영실태와 경상북도의 추진방향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를 통하여 문화예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북문화 예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문화예술전담기구 설립 형태를 검토하며,
- 문화재단 설립 시 타당성, 사업범위, 조직 및 인력수요, 적정 자본금 규모 등 전문적인 연구분석과 아울러, 문화재단 설립 시 각종 행정절차의 수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6년 12월

2.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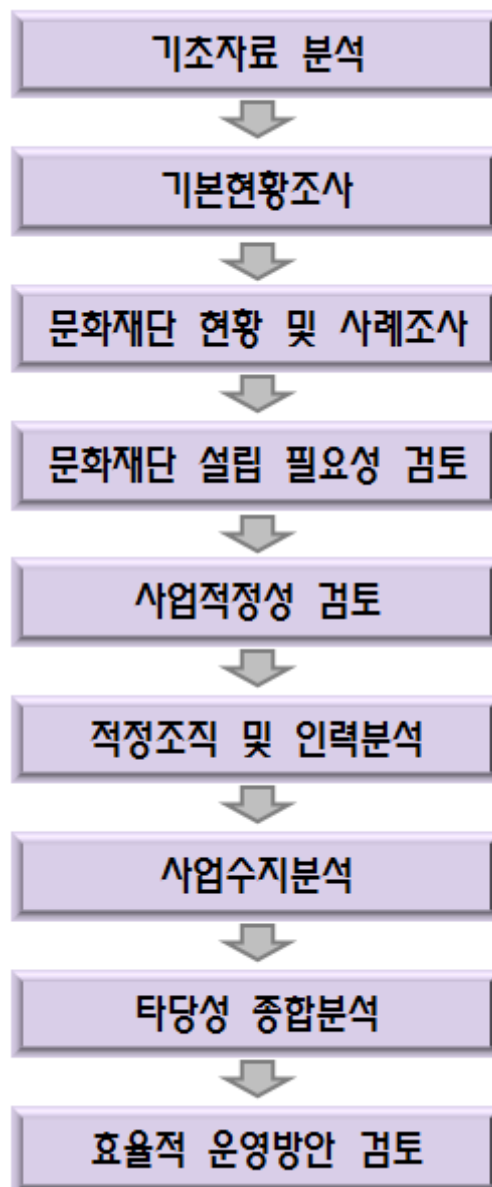
3. 내용적 범위


- 가칭)경북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 타당성 조사분석
- 가칭)경북문화재단 설립 · 운영 기본계획(안) 제시
- 재단설립 이외 대안 제시
- 행정절차 관련자료 제시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 연구의 수행방법은 경상북도 및 대상업무의 현황에 대한 자료검토, 타지역 문화재단 조사분석, 환경분석을 통해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대상사업의 규모 및 범위를 설정하며, 이에 따른 관리운영체계 및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한다.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제 2 장 기본현황



제1절 인문·지리적 현황

제2절 경제적 현황

제3절 재정현황

제2장 기본현황

제1절 인문·지리적 현황

1. 지리적·지역적 특성

- 경상북도는 한반도의 동남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은 동해안, 북쪽은 강원·충북, 서쪽은 충북·전북, 남쪽은 경남·울산과 연결해 있다.
- 수도 서울에서 반경 170~430km내에 위치하고 항공,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입체적인 교통망이 연결되어 50분에서 3시간 내외의 편리한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다.
-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로 둘러싸인 거대한 분지의 지형으로 연간 강수량은 900~1,300mm로 지역적인 차가 크며, 울릉도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난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 경상북도 위치도

구분	지명(극점)
동단	울릉군 울릉읍 독도 동단 (동경 131도 52분)
서단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서단 (동경 127도 48분)
남단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남단 (북위 35도 34분)
북단	울릉군 북면 관음리 북단 (북위 37도 33분)

2. 인구현황

1) 세대 및 인구현황

○ 2016년 말기준 경상북도의 행정구역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1,180,643세대에 인구는 2,751,749명으로 세대당 인구수는 2.3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성비는 남자 1,389,260명, 여자 1,362,489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6,771명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세대수	인 구 수			세대당인구
		계	남	여	
포항시	212,095	522,030	264,235	257,795	2.5
경주시	113,798	268,928	136,327	132,601	2.4
김천시	62,202	144,254	72,376	71,878	2.3
안동시	73,714	170,133	83,909	86,224	2.3
구미시	168,487	425,492	217,849	207,643	2.5
영주시	48,678	110,287	54,732	55,555	2.3
영천시	47,509	103,613	53,001	50,612	2.2
상주시	46,750	102,701	50,221	52,480	2.2
문경시	34,643	75,357	36,832	38,525	2.2
경산시	107,821	266,486	135,041	131,445	2.5
군위군	12,428	24,787	12,646	12,141	2.0
의성군	27,440	54,722	26,739	27,983	2.0
청송군	13,460	26,552	13,109	13,443	2.0
영양군	8,800	17,929	8,789	9,140	2.0
영덕군	20,185	39,973	19,305	20,668	2.0
청도군	21,722	44,603	21,815	22,788	2.1
고령군	16,215	36,069	18,947	17,122	2.2
성주군	21,877	46,886	24,426	22,460	2.1
칠곡군	53,695	127,330	66,899	60,431	2.4
예천군	22,123	46,688	22,880	23,808	2.1
봉화군	16,492	33,809	16,759	17,050	2.1
울진군	25,186	52,974	26,877	26,097	2.1
울릉군	5,323	10,146	5,546	4,600	1.9
합계	1,180,643	2,751,749	1,389,260	1,362,489	2.3

註) 자료 : 경상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 (2016년 말 기준)

2) 세대 및 인구추이

- 인구는 2010년 2,726,815명에서 2016년 2,751,749명으로 5년 간 약 2만명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0.15%의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세대수는 연평균 1.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세대 수는 1,180,643세대, 세대 당 인구는 2.3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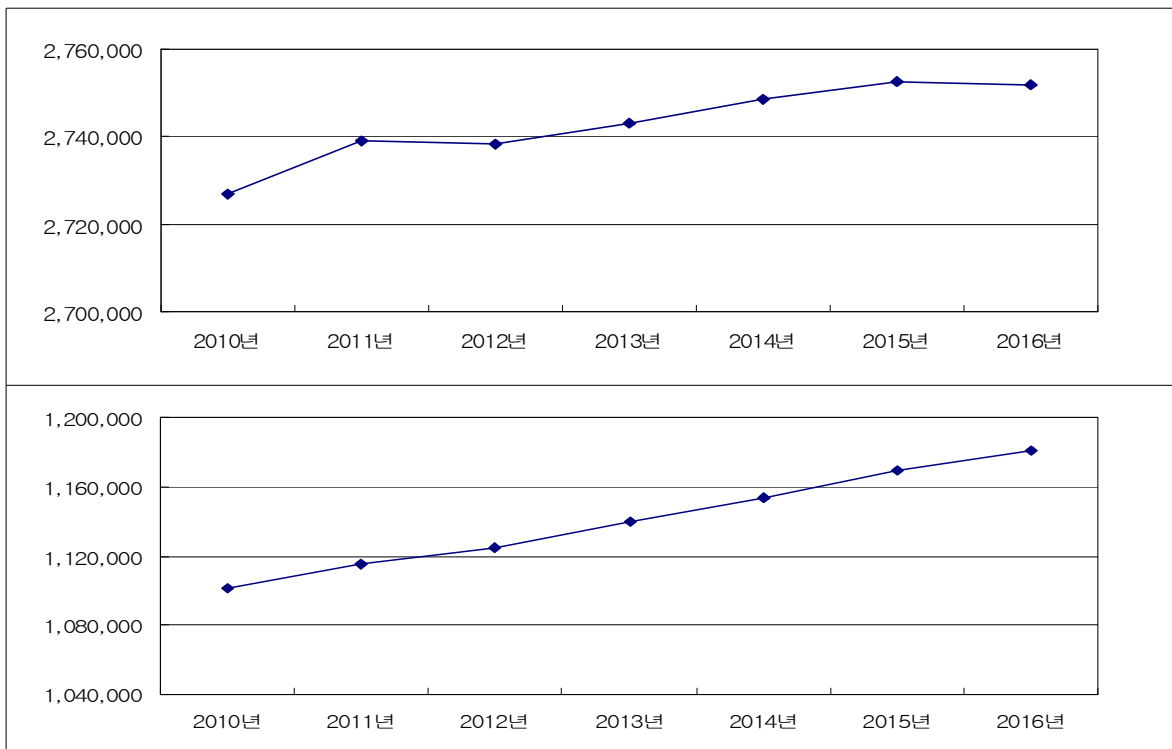
<표 2-2> 연도별 인구 및 세대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세대	인구수			세대당인구
		합계	남	여	
2010년	1,101,486	2,726,815	1,373,272	1,353,543	2.5
2011년	1,114,901	2,739,179	1,380,367	1,358,812	2.5
2012년	1,125,195	2,738,420	1,379,825	1,358,595	2.4
2013년	1,139,387	2,742,939	1,382,922	1,360,017	2.4
2014년	1,153,559	2,748,599	1,386,564	1,362,035	2.4
2015년	1,169,648	2,752,591	1,388,885	1,363,706	2.4
2016년	1,180,643	2,751,749	1,389,260	1,362,489	2.3

註) 자료 : 2015년 경북통계연보, 경상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말 기준)

<그림 2-2> 연도별 인구 및 세대수 추이



제2장 기본현황

3. 행정구역 및 면적

- 총 면적은 19,028.96km²로 10개 시와 13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6개 읍과 202개 면, 94개의 행정동과 295개의 법정동이 있다.

<표 2-3> 경상북도 행정구역 현황

시·군별	면적		시	군	구		읍	면	동	
	(km ²)	구성비(%)			자치	일반			행정	법정
계	19,028.96	100.00	10	13	0	2	36	202	94	295
포항시	1,129.84	5.9	1			2	4	10	15	41
경주시	1,324.51	7.0	1				4	8	11	44
김천시	1,009.09	5.3	1				1	14	7	20
안동시	1,521.90	8.0	1				1	13	10	42
구미시	615.39	3.2	1				2	6	19	30
영주시	669.09	3.5	1				1	9	9	13
영천시	919.35	4.8	1				1	10	5	30
상주시	1,254.79	6.6	1				1	17	6	36
문경시	911.61	4.8	1				2	7	5	11
경산시	411.78	2.2	1				2	6	7	28
군위군	614.21	3.2		1			1	7		
의성군	1,175.17	6.2		1			1	17		
청송군	846.08	4.5		1			1	7		
영양군	815.17	4.3		1			1	5		
영덕군	741.10	3.9		1			1	8		
청도군	693.78	3.6		1			2	7		
고령군	384.11	2.0		1			1	7		
성주군	616.13	3.2		1			1	9		
칠곡군	450.97	2.4		1			3	5		
예천군	661.14	3.5		1			1	11		
봉화군	1,201.47	6.3		1			1	9		
울진군	989.42	5.2		1			2	8		
울릉군	72.86	0.4		1			1	2		

註) 자료 : 2015년 경북통계연보

제2절 경제적 현황

1. 지역 총 생산액

- 경상북도 지역 총 생산액은 2014년 기준 연간 약 92조 7천억원 수준이며, 전국 대비 6.2% 내외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1인당 지역 총 생산액은 전국평균이 2010년 26백만원에서 2014년 29백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경북평균이 2010년 31백만원에서 2014년 35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약 15~20% 정도 높은 수준이다.

<표 2-4> 지역총생산(당해년 가격)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역총생산 (십억원)	전 국	1,265,146	1,330,888	1,377,041	1,430,255	1,485,505
	경 북 (구성비)	80,839 (6.39%)	82,276 (6.18%)	85,401 (6.20%)	89,132 (6.23%)	92,697 (6.24%)
1인당 지역총생산 (천원)	전 국	25,605	26,736	27,538	28,480	29,460
	경 북	30,763	31,222	32,340	33,750	35,107

註) 자료 : 2015년 경북통계연보, 통계청 지역소득

제2장 기본현황

2. 경상북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경상북도 사업체 수는 2010년 186,694개에서 2014년 213,813개로 증가, 종사자 수는 2010년 927,285명에서 2014년 1,028,921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사업체 당 평균 종사자 수는 2010년 4.97명에서 2014년 4.81명으로 감소하여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가 점차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경상북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개,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사업체 수	186,694	193,364	199,547	205,734	213,813
	종사자 수	927,285	945,683	966,347	1,004,067	1,028,921
개인 사업체	사업체 수	156,604	161,727	165,457	168,924	174,050
	종사자 수	361,570	374,665	380,828	390,799	402,888
회사 법인	사업체 수	14,464	15,904	17,675	19,452	21,817
	종사자 수	376,586	381,720	393,016	407,596	414,432
회사 이외 법인	사업체 수	8,647	8,547	8,759	9,363	9,900
	종사자 수	167,842	166,054	167,299	176,927	181,325
비법인	사업체 수	6,979	7,186	7,656	7,995	8,046
	종사자 수	21,287	23,244	25,204	28,745	30,276
사업체 당 평균 종사자 수		4.97	4.89	4.84	4.88	4.81

註) 자료 : 2015년 경북통계연보

제3절 재정현황

1.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다는 것이며, 2016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는 30.02%이다.

<표 2-6>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백만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0.02	7,032,215	2,110,930	4,871,285	50,000	-

註) 자료 : 경상북도 재정공시 2017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것이며, 2016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경상북도의 재정자주도는 43.45%이다.

<표 2-7> 재정자주도 현황

(단위 : %, 백만원)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자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3.45	7,032,215	3,055,393	3,926,822	50,000	-

註) 자료 : 경상북도 재정공시 2017

2. 통합재정수지

○ 2016년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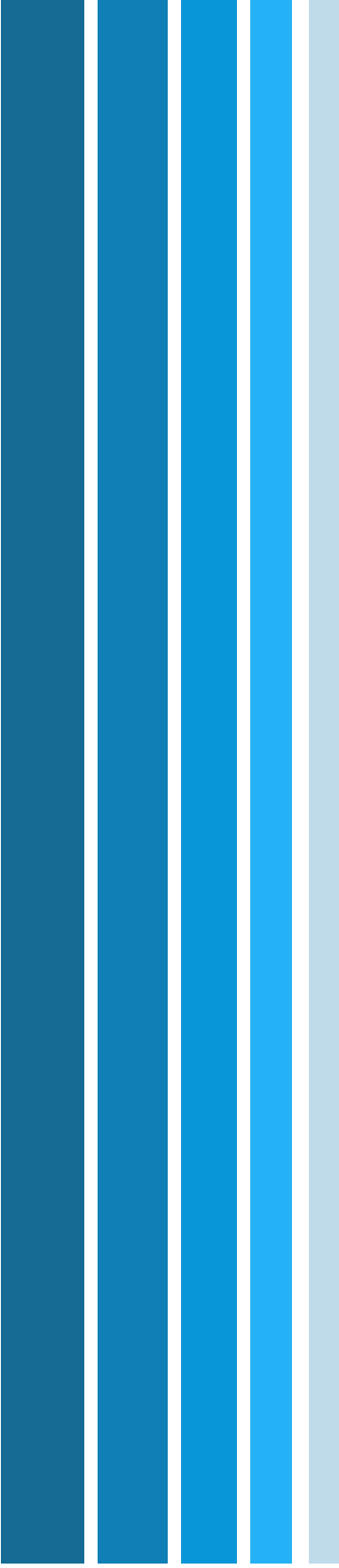
<표 2-8> 통합재정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통계규모	세 입	7,155,413	6,695,493	423,141	20,448	16,332
	지 출	7,694,203	6,953,051	589,290	125,288	26,574
	순융자	102,783	12,200	4,800	49,090	36,693
	순세계 잉여금	681,903	382,477	26,735	272,691	0
통합재정규모 (지출 및 순융자)		7,796,986	6,965,251	594,090	174,378	63,267
통합재정수지 (세입-지출 및 순융자)		△641,573	△269,758	△170,949	△153,931	△46,935
순세계잉여금포함수지		40,331	112,720	△144,214	118,760	△46,935


註) 1. 자료 : 경상북도 재정공시 2017

2. 통합재정정보 현황은 세입·세출예산에서 보전재원이 제외된 순수재정수입과 지출임



제 3 장

지역문화재단의 실태분석



제1절 지역문화재단의 개요

제2절 지역문화재단 현황

제3절 관련법규 검토

제3장 지역문화재단의 실태분석

제1절 지역문화재단의 개요

1. 문화재단의 유형

- 문화재단은 설립주체에 따라 기업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 특별법 문화재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기업이 재원을 출연하여 설립하면 기업문화재단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출연하거나 일부 기부금을 받아 설립하면 지역문화재단이라 한다.
- 특별법 문화재단은 정부가 설립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대표적이며 지역문화재단이 생기기 전 문예진흥기금과 복권기금으로 모든 지원 사업과 문화예술진흥분야를 주관하여 왔다.

2. 지역문화재단의 설립근거

- 지역문화재단 설립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분권과 분산에 대한 논의확산과 함께 대두되었으며, 1997년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문화육성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해 오고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2항에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광역문화재단은 설립근거를 마

제3장 지역문화재단의 실태분석

련하였으나, 기초문화재단은 법적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그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있었다.

- 지역문화진흥법(2014.1.28 제정, 2014.7.29시행) 시행에 따라 광역 뿐만 아니라 기초까지 포괄한 문화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문화진흥법의 광역문화재단 설립근거가 통폐합되었다. 법 제 19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지역문화재단의 설립목적

1) 광역문화재단의 설립목적

-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당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해당 시·도의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립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자체 문화예술관련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다.

2) 기초문화재단의 설립목적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재단의 규모와 수행 역할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기초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다.
-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태, 사업 중심 운영형태, 시설과 사업의 복합적인 운영형태 등 각 재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는 형태의 차이일 뿐 지향하는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다.

4.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범위

- 현재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의 조례를 살펴보면 각 문화재단들마다 사업범위는 다양하지만, 문화시설운영, 문화예술진흥, 문화정책, 전통문화, 축제운영, 교류사업 등으로 크게 정리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재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 지역문화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 그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절 지역문화재단 현황

1. 지역문화재단 설립현황

- 지역문화재단은 2017년 3월 현재 광역문화재단 16개, 기초문화재단 58개로 총 74개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문화재단(1997년)이 최초로 설립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강릉문화재단(1998년)이 최초로 설립되었다.
- 1990년대 후반 설립되기 시작한 지역문화재단은 2000년 이후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3-1> 지역문화재단 설립현황

구분	광역 문화재단	기초 문화재단	계	구성비(%)
서울	1	8	9	12.16%
부산	1	-	1	1.35%
대구	1	5	6	8.11%
인천	1	1	2	2.70%
광주	1	-	1	1.35%
대전	1	-	1	1.35%
울산	1	1	2	2.70%
세종	1	-	1	1.35%
경기	1	13	14	18.92%
강원	1	6	7	9.46%
충북	1	2	3	4.05%
충남	1	4	5	6.76%
전북	1	3	4	5.41%
전남	1	4	5	6.76%
경북	-	6	6	8.11%
경남	1	5	6	8.11%
제주	1	-	1	1.35%
합계	16	58	74	100.0%
구성비(%)	21.62%	78.38%	100.00%	

註) 자료 : 행정자치부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 각 문화재단 홈페이지

<표 3-2> 광역문화재단 설립현황

재단명	설립일	사업내용	인력현황	예산규모 (억원)
서울문화재단	2004.03	문예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문화나눔, 문화향유프로그램 운영	165명 (108/57)	334
부산문화재단	2009.01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학예진흥사업, 무산메세나촉진사업	62명 (26/36)	286
대구문화재단	2009.04	문화예술창작보급 및 활동지원, 대구문화브랜드개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류사업	48명 (19/29)	199
인천문화재단	2004.12	문화예술기금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류, 문화예술정책연구, 아트플랫폼운영	67명 (33/34)	196
광주문화재단	2010.12	문화예술정책개발 및 사업실행, 문화관광진흥사업, 문화예술기금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류, 축제행사, 빛고을 시민문화관 운용 및 지원	108명 (59/49)	187
대전문화재단	2009.09	문화예술창작, 보급, 활동지원, 문화향유기획확대사업,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문화예술진흥 정책자문 및 교육, 조사연구, 국내외문화예술교류사업, 문화예술 정보관리 및 서비스제공	49명 (47/2)	133
울산문화재단	2016.12	문화예술진흥기반 구축, 예술창작·발표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축제운영	26명	-
세종시 문화재단	2016.10	문화예술진흥사업 개발/추진/자문/지원, 문화예술인력 양성 및 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 협력 및 교류,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조사연구, 문화예술후원 관련 사업, 축제 및 문화행사 육성지원	23명	-
경기문화재단	1997.07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현대화, 문화예술창작보급 및 활동지원, 문화예술정책개발 및 자문, 문화예술육성 지원,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국제문화예술 교류, 지방향토사 연구, 문화예술시설 관리 및 운영,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337명 (170/167)	630
강원문화재단	1999.12	지역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강원국악예술회관위탁관리, 강원문화재단연구소운영	67명 (33/34)	176
충북문화재단	2011.11	문화예술창작보급 및 활동지원,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문화예술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서비스사업	26명 (11/15)	138

제3장 지역문화재단의 실태분석

재단명	설립일	사업내용	인력현황	예산규모 (억원)
충남문화재단	2013.12	문화예술진흥 정책개발 및 자문, 문화예술창작보급 및 활동지원, 문화서비스확대 및 문화예술교육지원,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16명 (12/4)	152
전북문화 관광재단	2016.04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문화관광상품개발, 문화예술상설공연 운영,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활성화	24명 (19/5)	180
전남문화 관광재단	2009.05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문화관광상품개발, 전통예술보급및육성, 문화유산보존및활용, 문화재발굴및지표조사	38명 (27/11)	201
경남문화 예술진흥원	2013.07	문화예술정책개발,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문화향유제고사업, 문화예술교육및문화산업육성지원, 전통문화전승, 문화유산발굴보존, 문화산업기반조성및육성사업지원, 영상산업육성지원	30명 (14/16)	178
제주문화 예술재단	2001.01	문화예술정책개발, 문화예술사회교육지원, 문화예술의창작보급및문화예술활동지원 메세나운동, 문화예술인복지지원, 문화예술산업의 육성지원, 문화예술정보교류,	23명 (16/7)	104

註) 자료 :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 유사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업무영역

-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은 분야, 규모, 성격 등에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광역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에, 기초문화재단은 문화시설 운영에 주력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도 단위 광역문화재단 업무영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지원, 지역문화진흥, 문화나눔 등의 업무는 모든 도 단위 광역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도 단위 문화시설이 존재하는 자치단체에서는 문화시설을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3> 도 단위 광역문화재단 업무영역

구분	문화정책	문화시설	축제행사	교육지원	문화진흥	문화나눔	문화재조사	관광진흥	기타
경기문화재단	○	○		○	○	○	○		
강원문화재단	○	○	○	○	○	○	○		영상산업지원
충북문화재단	○	○		○	○	○			
충남문화재단	○	○	○	○	○	○			
전북문화관광재단	○		○	○	○	○		○	
전남문화관광재단	○	○		○	○	○	○	○	도립국악단, 남도예술은행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콘텐츠지원, 영상제작지원

제3장 지역문화재단의 실태분석

1) 경기문화재단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내용
문화기반 시설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운영 - 관련자료의 수집, 연구, 보존, 전시, 교육프로그램 등
	경기창작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예술가들의 창작 및 연구활동 지원
	경기상상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생활문화센터 및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 도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 - 청년들의 문화적 일자리 창출 및 문화콘텐츠 지원
학술연구	대행 및 위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문화 활성화사업, 옛길 조성 및 관리, 항일유적 실태조사 등
	아카이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자료 아카이브 및 홈페이지 관리
문화재 조사연구	경기문화재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발굴조사, 문화재 보존처리(연구원 유물 및 외부용역), 문화유산활용콘텐츠 개발 운영
문화예술 교육지원	기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모임, 예술가와 기획자 간 협업 프로젝트 지원 문화예술교육 웹진 발간 및 자료실 운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성 - 교육청, 재단 운영기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도내 기초문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단체 및 전문가 등
	예술강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각급학교에 예술강사 파견, 협력수업을 지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학교 밖 문화기반시설을 기반으로 학생 및 가족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특성화문화예술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이 지닌 유무형의 자원을 조사·탐색하여 지역과 삶을 이해하고 지역적 삶과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교육프로그램 지원
문화나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나눔티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회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
문화이음	문화예술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인 문화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펼치는 문화예술 기부캠페인
문화예술 진흥	공모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기획,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전문예술 창작지원 등

2) 강원문화재단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내용
영상산업 활성화	로케이션 스카우팅 및 촬영지원	• 도내 촬영 준비 영상물에 대하여 로케이션 정보제공 및 인허가 지원
	도내 단편영화 제작지원	• 도민이 감독 및 프로듀서로 참여하는 작품에 대하여 심사를 통한 제작비 지원
	찾아가는 영화관	• 영상문화에 소외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
	영상문화 아카데미	• 영상문화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상/인문학 등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무료로 강의
행사운영	평창대관령음악제	• 매해 여름 각국의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강원도 곳곳에서 펼치는 음악제
	평창겨울음악제	• 매해 겨울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음악인들을 초청하여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음악회 개최
문화기반 시설운영	강원공연예술 연습공간	• 공연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연습공간으로 다양한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예술가 교류를 위한 공간 제공 - 공연예술 전문단체 및 아마추어단체(동호회) 이용 가능
문화재 조사연구	강원문화재연구소	• 문화재 발굴조사, 문화재 보존처리 • 문화재 돌봄사업 - 보존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
문화예술 교육 지원	예술강사지원	• 각급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8개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꿈다락토요문화학교	• 아동·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또래와 가족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체험, 탐구, 공감프로그램
	특성화문화예술 교육지원	• 지역 및 대상을 특화한 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프로그램
	기타	• 즐거운 예술놀이터, 우리동네 문화유산탐험대, 군 장병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 문화예술교육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율연구모임 지원, 공무원 연수 등 • 강원문화예술교육 공감마당(지역문화예술인 활용 축제형 프로그램)
문화나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강원사랑티켓	• 65세 이상 어르신 및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료 일부 지원
문화예술 기부	문화예술기부	• 강원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후원인을 발굴 모집하고 체계적인 후원제도 구축
문화예술 진흥	공모지원사업	• 전문예술 창작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우리가락우리마당,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강원문화예술활성화지원, 신진예술가 창작활동지원, 학술연구진흥지원, 청년기획육성지원

제3장 지역문화재단의 실태분석

3) 충북문화재단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내용
문화기반 시설운영	충북문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을 위한 창작활동 공간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과 교육을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 기획전시, 대공연,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충북문화예술인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사무공간 위탁관리 및 문화예술 소통공간으로 활용
문화예술 교육지원	예술강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각급학교에 예술강사 파견, 협력수업을 지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학교 밖 문화기반시설을 기반으로 학생 및 가족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문화나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충북 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사랑티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 어르신 및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료 일부 지원
문화이음	문화예술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인 문화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펼치는 문화예술 기부캠페인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청년예술가 창작환경지원, 창작거점공간 지원(구,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충북미술가 서울전시회 운영비 지원, 전문예술 창작지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 무지개다리(문화교류), 문화예술육성 지원(창작 및 활동사업비 지원)
	충청권 인생나눔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나눔 멘토를 선발/파견하여 인문 문화예술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에 전문예술가를 파견지원하고, 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충북기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사업 지원을 통한 충북 문화예술 콘텐츠 구축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4) 충남문화재단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내용
문화기반 시설운영	충남도청 문예회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공연기획 및 공연유치
행사운영	문화예술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공연 ‘Great to see you(그랬슈) 콘서트’ - 우리음악과 서양음악의 만남, 젊은 음악인들의 만남, 명인들의 무대 등으로 충남 전통예술의 진흥을 지향하는 전통예술 브랜드 공연
	충남 역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탐방(이제는 금강이다), 보부상 장마당놀이(전통문화축제), 무지개다리사업, 작은미술관, 종고제맥이기, 무령왕 기원제 등
문화예술 교육지원	예술강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각급학교에 예술강사 파견, 협력수업을 지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일 학교 밖 문화기반시설을 기반으로 학생 및 가족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협력 및 네트워크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반시설,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교육 관련기관, 인력 등의 네트워크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인력양성 및 정보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 자료집 및 뉴스레터 발간, 예술강사 데이터베이스 운영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 청소년이 오케스트라 합주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우는 지역사회 참여형 모델 개발사업
문화나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기부금품 모집	컬-프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활동 - 사업 및 사용방법을 재단에 일임하는 순수기부와 기부자가 예술단체 및 개인 등을 지정하는 조건부기부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순수예술창작활동 지원), 신진예술가 지원, 신진단체 지원, 충남향토문화예술육성 지원, 생활문화예술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

제3장 지역문화재단의 실태분석

5) 전북문화관광재단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내용
행사운영	상설공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대표 브랜드공연 등의 기획, 제작, 콘텐츠 등을 관리하여 공연이 운영되도록 하며, 홍보마케팅 등을 기획하여 운영함 - 땀다!심청,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 노상놀이 등 도내 시군의 한옥자원 및 대표축제 등 관광요소를 활용하여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공연예술과 함께하는 전북관광활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통해 풍요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지역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주민주도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꿈다락토요문화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예술가와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지역을 탐구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밖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문화파출소 조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문화파출소로 조성하여 운영하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대여
	예술강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각급학교에 예술강사 파견, 협력수업을 지원
	기타 교육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문화예술커뮤니티 지원, 도민문화예술 인문클래스 지원, 전북문화예술교육축제,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광역/기초재단 간 문화예술발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재단의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한 지원
문화나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기부금품 모집	전북메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과 문화예술단체 간 상호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동참을 유도하고 문화예술단체 후원체계 마련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창작지원, 문화예술 기반구축 지원, 문화예술 교류활동 지원, 신진예술가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 등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소극장 지원, 해외전시지원, 우라가락우리마당 지원 등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전북아트페어) 지원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축제와 연계한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으로 문화관광기반 구축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관광자원 및 명소를 발굴하고 지역문화예술인의 예술작품으로 관광자원화
	관광기념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기념품을 선정하여 판매관을 통해 판매하며, 관광기념품의 유통확대와 홍보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강의,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호남관광진흥협의회 컨퍼런스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실무협의체(전남, 전북, 광주) 회의 개최를 통한 호남지역 여행코스 개발 및 협조체계 구축

6) 전남문화관광재단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내용
문화기반시설운영	남도소리올림터 수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8석의 공연장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 매주 토요일 전남도립국악단의 토요상설공연이 이루어지며, 국내외 유명 공연예술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대관
남도예술은행운영	남도예술은행 수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미술작가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미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장기예술지원프로젝트 - 상설판매관에서 전남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고, 수시로 경매하며, 유료로 임대함
도립국악단 운영	전남도립국악단 수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 상설공연 등 다양하고 활발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함
문화재 조사연구	문화재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발굴조사, 문화재 보존처리 • 문화유적의 정비 및 복원방안 강구
문화예술 교육지원	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통해 풍요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지역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주민주도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꿈다락토요문화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예술가와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지역을 탐구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밖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문화파출소 조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문화파출소로 조성하여 운영하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대여
	전문인력 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비 지원, 지역문화예술네트워크포럼,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 등
	생활문화예술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생산자로서 주체적인 문화소비로 생활 속 일상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문화나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찾아가는 영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영화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내 공간을 활용하여 최신영화를 상영함
기부금품 모집	문화예술기부메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동참을 유도하고 문화예술단체 후원체계 마련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창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공연장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 국제문화예술교류, 공연예술작품 제작지원 등
	문화예술기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도문화예술특성화 기획지원, 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지원, 청년예술가 육성, 전문문화예술기획자 양성 등
문화관광	관광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사 지원을 통한 중국 등 해외관광객 유치 • 마이스 산업 구축 및 유치 • 의료/웰니스 관광인프라 구축, 상품개발 등
	관광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DB 구축 및 관광상품 개발 • 관광전문인력 양성 • 관광공모사업 추진

제3장 지역문화재단의 실태분석

7)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내용
문화기반 시설운영	경남예술창작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보하고 유망한 신진작가들에게 창작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문화예술 교육지원	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민이 생활권 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발굴/지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예술가와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지역을 탐구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밖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예술강사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급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8개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분야의 관련 인력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전문성 강화연수, 공무원 문화감성연수,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연수, 사례탐방 워크숍 등
	정책홍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홍보물 발간,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인식을 제고하고 거점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역할 재조명
문화나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기부금품 모집	문화예술기부메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및 사용방법을 재단에 일임하는 순수기부와 기부자가 예술단체 및 개인 등을 지정하는 조건부기부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창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등
기타	문화콘텐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콘텐츠아카데미(창의인재양성),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한 융복합문화콘텐츠 개발, 기능성 게임제작 지원, 스토리랩, 융합형 게임콘텐츠 산업육성 등
	영상물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영화 제작지원, 로케이션 촬영 지원, 영화상영지원 등

제3절 관련법규 검토

1. 지역문화진흥법

1)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제3장 지역문화재단의 실태분석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지역문화재단의 실태분석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실적 보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기부금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1)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 가. 지방직영기업
 - 나. 지방공사
 -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 ④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

제3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4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의 대상이 되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중이라도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법인격 또는 명칭 등이 변경되거나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조 본문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지방자

제3장 지역문화재단의 실태분석

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를 한다. <개정 2014.11.1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 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1.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2.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29.>

제8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보유계획, 지원금 지급 계획
5. 설립 후 5년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
6.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의 현황
7.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이 영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의견제시 내용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의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출자·출연하는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출자금: 5억원
나. 출연금: 2억원
2.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출자·출연하는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출자금: 3억원
나. 출연금: 1억원

3. 민법

1) 법률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4. 문화예술진흥법

1)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복지시설
2. 문화 보급·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8.13.]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나. 문고: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

-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 나.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7. 그 밖의 문화시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5.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09.12.31., 2015.7.16.>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 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

제3장 지역문화재단의 실태분석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개정 2013.1.16.>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② 삭제 <2012.8.1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령"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4.8.12.>

1.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발급
2. 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 목적이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등 도박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3.3.>

제31조(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제 4 장

경북 지역문화 현황 및 실태



제1절 경상북도 문화정책
(경북 문화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제2절 문화시설 현황 및 실태

제3절 문화예술 현황

제4절 도민 문화향유 및 문화의식

제4장 경북 지역문화 현황 및 실태

제1절 경상북도 문화정책 (경북 문화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1. 경북 문화비전 및 의미

新컬처로드의 중심, 세계 문화웅도 慶北
- 세계의 문화는 천년 감동의 경북으로 通한다 -

- 한국문화의 총 본산으로서 경상북도가 명실상부한 세계 문화로 통하는 중핵이자 新컬처로드로 도약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
-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유산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경북문화 르네상스 구현
 - (경상북도) 한국 문화력의 근간인 경북문화의 재발견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융합적 문화생태계 조성으로 내발적 역량 강화로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문화가 중심이 되는 문화웅도 지향
 - (대한민국) 전통문화와 융합된 창조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자립형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가적 미션 수행

2. 비전 구현을 위한 3대 목표

- 비전 구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문화의 생활화’, ‘문화의 산업화’, ‘문화의 글로벌화’ 등을 3대 목표로 설정

1) 문화의 생활화(사람)

- 도민의 주도적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향상
-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
 - 다양하고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접할 기회를 늘려 개인의 잠재적 창조성을 확대
 - 문화예술 다양성 및 인프라 확대, 교육기능 차별화, 도민 주도 운영/공연
- 참여·소통·통합·기회·협력을 중시하는 관계지향형 추구

2) 문화의 산업화(경제)

- 전통문화의 역사적·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조화를 통한 컬처노믹스 실현
 - 문화상품의 제작, 투자, 교역 등 모든 산업활동과 문화활동을 동시에 육성
- 콘텐츠기술(CT)과 문화원형의 통섭
 - 경북 특화자원인 문화원형이 콘텐츠기술(CT)과 통섭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
- 문화기술(Contents Technology) 육성, 창업 및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산업 지원

3) 문화의 글로벌화(세계)

- 새로운 한류를 선도하는 열린 경북 지향
 - 한국 문화력의 본산을 넘어서 세계로 웅비하는 크리에이티브 경북
 - 차별화된 문화브랜드를 선도하여 국가간 교류·협력·수출의 중심에 경북 위치

- 지역에 적합했던 삶과 양식, 가치관은 계승하면서 미래를 개척하는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를 구현하는 글로벌화 추구



제2절 문화시설 현황 및 실태

1. 도내 기초자치단체 간 비교

- 지역 문화 활동 공간 마련으로 도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등 문화 복지 향상과 내실 있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설로 공립 문화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 경상북도 문화기반시설은 2015년 193개관에서 2016년 196개관으로 1년간 3개관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박물관이 1개관 증가하였고 미술관이 2개관 증가하였다.

<표 4-1> 2015년 대비 2016년 경북 문화기반시설 현황

(단위 : 개관)

구분	합계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2015년	193	64	64	9	26	23	7
2016년	196	64	65	11	26	23	7
증가량	3	-	1	2	-	-	-

註) 자료 : 각 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량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기반시설 중 공공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의 시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미술관과 문화의 집은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상당수이다.

<표 4-2> 2016년 경북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현황

사·군	합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경북 전체	196	64	35	28	1	65	37	17	11	11	5	5	1	26	23	7
포항시	20	9	6	2	1	4	2	2		1	1			3	1	2
경주시	19	7	6	1		7	1	3	3	3	2	1		1	1	
김천시	8	1	1			2	1	1		1	1			2	1	1
안동시	17	4	1	3		9	4	4	1					2	1	1
구미시	11	6	5	1		2	1	1						1	1	1
영주시	10	3	1	2		3	2	1						2	1	1
영천시	7	2	1	1		2	1	1		1		1		1	1	
상주시	9	2		2		5	5							1	1	
문경시	13	5	3	2		6	5	1						1	1	
경산시	14	3	2	1		8	2	1	5	1			1	1	1	
군위군	5	1		1		2	1		1					1	1	
의성군	6	2	1	1		2	2							1	1	
청송군	7	2	1	1		2	2			1	1			1	1	
영양군	5	1		1		1	1							1	1	1
영덕군	4	1		1		1		1						1	1	
청도군	5	2	1	1		1	1			1		1			1	
고령군	4	1		1		1	1							1	1	
성주군	4	2	1	1										1	1	
칠곡군	7	4	3	1		1			1					1	1	
예천군	6	1		1		2	1	1		1		1		1	1	
봉화군	4	1		1		2	2								1	
울진군	7	3	2	1		1	1			1		1		1	1	
울릉군	4	1		1		1	1							1	1	

註) 자료 : 각 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량 (문화체육관광부)

제4장 경북 지역문화 현황 및 실태

- 경상북도의 각 시군별 인구 1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를 살펴보면 도 평균 1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가 0.7개이며, 인구 수 20만명 이상의 도시는 인구 1만명당 0.5개 내외, 10만명 이상의 도시는 1만명당 0.5~1개, 10만명 미만의 도시는 1만명당 1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포항, 구미, 경주, 경산 등 인구가 많은 도시의 경우 높은 인구의 밀집도로 인하여 시설의 수보다 규모를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표 4-3> 2016년 도내 시군별 인구 1만명당 문화기반시설 현황

시군별	인구수(명)	문화기반시설수(개)	인구 1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경북 전체	2,751,749	196	0.7
포항시	522,030	20	0.4
경주시	268,928	19	0.7
김천시	144,254	8	0.6
안동시	170,133	17	1.0
구미시	425,492	11	0.3
영주시	110,287	10	0.9
영천시	103,613	7	0.7
상주시	102,701	9	0.9
문경시	75,357	13	1.7
경산시	266,486	14	0.5
군위군	24,787	5	2.0
의성군	54,722	6	1.1
청송군	26,552	7	2.6
영양군	17,929	5	2.8
영덕군	39,973	4	1.0
청도군	44,603	5	1.1
고령군	36,069	4	1.1
성주군	46,886	4	0.9
칠곡군	127,330	7	0.6
예천군	46,688	6	1.3
봉화군	33,809	4	1.2
울진군	52,974	7	1.3
울릉군	10,146	4	4.0

註) 자료 : 각 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량 (문화체육관광부)

2. 전국 광역자치단체 간 비교

- 경상북도 문화기반시설의 전국 대비 비율은 전체 7.6%로 문예회관과 지방문화원이 11.4%와 10.1%를 차지하여 높은 수준이며, 공공도서관과 미술관, 문화의 집은 5~6%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4> 전국 대비 경상북도 문화기반시설 비율

(단위 : 개관, %)

구분	합계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전국	2,594	978	826	219	229	228	114
경상북도	196	64	65	11	26	23	7
비율	7.6%	6.5%	7.9%	5.0%	11.4%	10.1%	6.1%

註) 자료 :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11.6%이며, 전국 대비 비율과 마찬가지로 미술관과 문화의 집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대비 경상북도 문화기반시설 비율

(단위 : 개관, %)

구분	합계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도 단위 광역자치 단체	1,694	630	537	135	162	155	75
경상북도	196	64	65	11	26	23	7
비율	11.6%	10.2%	12.1%	8.1%	16.0%	14.8%	9.3%

註) 1. 자료 :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는 전국 9개 도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8개 도의 합계임

제4장 경북 지역문화 현황 및 실태

- 경상북도의 문화기반시설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강원도 다음으로 많은 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회관과 지방문화원의 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2016년 전국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현황

지역	총 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서울	356	1	146	120	37	19	25	8
부산	87	-	36	19	6	11	14	1
대구	72	-	33	16	4	11	8	-
인천	97	-	46	30	4	8	8	1
광주	56	-	21	10	9	7	5	4
대전	56	-	24	16	5	3	5	3
울산	39	-	17	9	-	4	5	4
세종	12	-	4	6	-	1	1	-
경기	492	-	228	139	49	34	31	11
강원	206	-	53	96	11	18	18	10
충북	126	-	42	45	8	12	11	8
충남	154	-	58	46	9	18	16	7
전북	149	-	56	40	13	15	14	11
전남	181	-	64	46	25	19	22	5
경북	196	-	64	65	11	26	23	7
경남	190	-	65	60	9	20	20	16
제주	126	-	21	63	19	3	2	18
총 계	2,595	1	978	826	219	229	228	114
수도권	945	1	420	289	90	61	64	20
지방	1,650	-	558	537	129	168	164	94
총 계	2,595	1	978	826	219	229	228	114

- 경상북도 인구 1백만명 당 문화기반시설은 72.52개로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낮은 편이며, 특히 도서관과 미술관, 문화의 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표 4-7> 2016년 인구 1백만명당 문화기반시설 현황

(단위 : 개관/백만명)

지역	인구 수 (백만명)	총 계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서울	10.0	35.52	14.57	11.97	3.69	1.60	2.49	0.80
부산	3.5	24.76	10.25	5.41	1.71	3.13	3.98	0.28
대구	2.5	28.94	13.26	6.43	1.61	4.42	3.22	-
인천	2.9	33.15	15.72	10.25	1.37	2.73	2.73	0.34
광주	1.5	38.04	14.26	6.79	6.11	5.43	3.40	2.72
대전	1.5	36.87	15.80	10.53	3.29	1.98	3.29	1.97
울산	1.2	33.23	14.49	7.67	-	4.26	4.26	3.41
세종	0.2	56.90	18.97	28.45	-	4.74	4.74	-
경기	12.5	39.29	18.21	11.10	3.91	2.79	2.48	0.88
강원	1.5	132.95	34.20	61.96	7.10	12.30	11.62	6.45
충북	1.6	79.55	26.52	28.41	5.05	8.21	6.94	5.05
충남	2.1	74.12	27.92	22.14	4.33	8.18	7.70	3.37
전북	1.9	79.69	29.95	21.39	6.95	9.09	7.49	5.88
전남	1.9	94.81	33.53	24.10	13.10	9.95	11.52	2.62
경북	2.7	72.52	23.68	24.05	4.07	9.62	8.51	2.59
경남	3.4	56.47	19.32	17.83	2.67	5.94	5.94	4.76
제주	0.6	201.80	33.63	100.90	30.43	4.80	3.20	28.83
총 계	51.5	50.36	18.98	16.03	4.25	4.50	4.42	2.21
수도권	25.5	37.10	16.49	11.35	3.53	2.39	2.51	0.79
지방	26.1	63.32	21.41	20.61	4.95	6.45	6.29	3.61
총 계	51.5	50.36	18.98	16.03	4.25	4.50	4.42	2.21

제3절 문화예술 현황

1. 경상북도 문화예술업무 추진기반 현황

- 경북 도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부서는 경상북도청을 포함하여 24개이며, 대학 관련 학과는 121개(대학 55개, 전문대 14개, 대학원 52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 연합회 및 14개지회, 주요기관 및 단체 206개소, 공연단체 56개소, 사회적기업 15개소, 문화재단 5개소 및 문화기반시설 196개소가 있다.

<표 4-8> 경상북도 문화예술 추진기반 현황

(단위 : 개소)

행 정	교 육	창 작	매 개
도 (1)	대학(55과)	경북예총(1)	문화재단(6)
시 (10)	전문대학(14과)	경북예총지회(1)	문예회관(26)
군 (13)	대학원(52전공)	민간단체(206)	지방문화원(23)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공연단체(56)	문화의 집(7)
(재)문화엑스포		사회적기업(15)	공공도서관(64)
			박물관(65)
			미술관(11)

註) 자료 :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 5개년 시행계획(경상북도, 2017.03)’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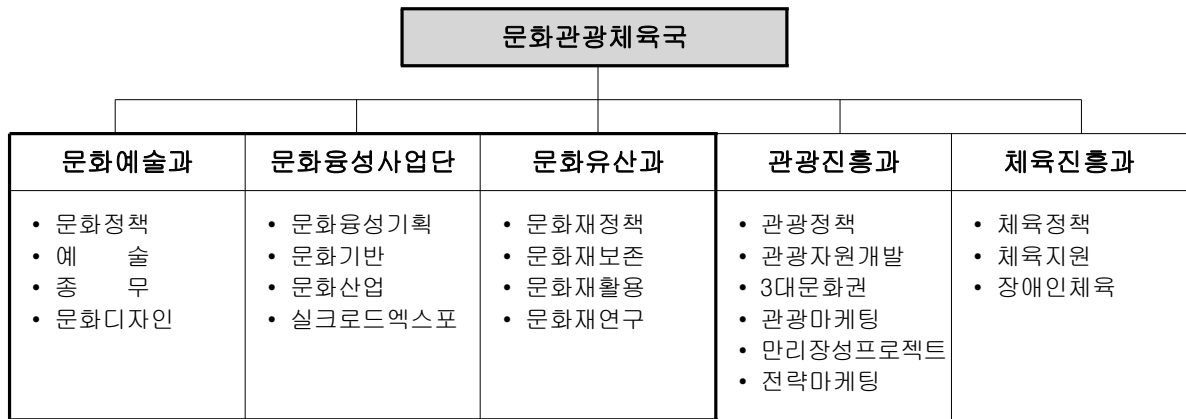
2. 경상북도 문화관련업무 추진 현황

1) 문화관련업무 추진기관 현황

(1)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 경상북도 문화업무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광 및 체육진흥업무와 함께 총괄하고 있으며, 문화업무는 3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 기구 : 4과 1사업단



○ 정·현원 현황 : 정원 91명 / 현원 88명 (과부족 3명)

(단위 : 명)

과 별	직 급	계						비고
		계	3~4급	5급	6급	7급	8~9급	
계		91/88	6/6	21/21	28/24	33/28	3/9	
문화예술과		21/20	2/2	4/4	5/5	9/6	1/3	
문화융성사업단		18/17	1/1	4/4	6/4	7/7	0/1	
문화유산과		16/16	1/1	4/4	5/4	6/6	0/1	
관광진흥과		22/22	1/1	6/6	7/7	8/5	0/3	
체육진흥과		14/13	1/1	3/3	5/4	3/4	2/1	

註) 자료 : 문화예술과 내부자료(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제4장 경북 지역문화 현황 및 실태

○ 과별 담당업무

과 별	주 요 업 무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역문화 발굴 육성 •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및 도립예술단 운영 • 전통사찰 관리 및 종교단체 활동 지원 • 문화디자인에 관한 사항 및 삼국유사 목판사업 등
문화융성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융성 기획 및 인문정신문화자원 발굴·활용 •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 시설 설립·육성·지원 • 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문화유통산업 진흥 • 문화엑스포 세계브랜드산업 육성 및 실크로드 재조명 등
문화유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관련 정책수립, 문화재 재난안전대책, 우리문화재 찾기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및 지정·해제·보호구역 관리 •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문화재 활용사업 • 무형문화재 관련 정책수립 및 전승·보전 등
관광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시책 발굴 및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 문화관광 자원개발 및 관광지·관광특구 지정·관리 •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 • 지역축제 지원·육성 및 국내·외 관광마케팅 • 중국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홍보 등 • 관광상품개발 및 테마열차 운행, 마이스 유치지원 등
체육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육성 • 국제 및 전국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 도민체육·도민장애인체육대회 개최 •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

○ 2017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문 화 예술과	문화융성사업단	문 화 유산과	관 광 진흥과	체 육 진흥과
예산액	493,074	46,455	41,897	98,829	247,567	58,326
비 율	100.0%	9.4%	8.5%	20.0%	50.2%	11.8%

(2)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 경북도 출연기관

○ 설립목적

- 경상북도의 문화산업을 지식기반 첨단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 주요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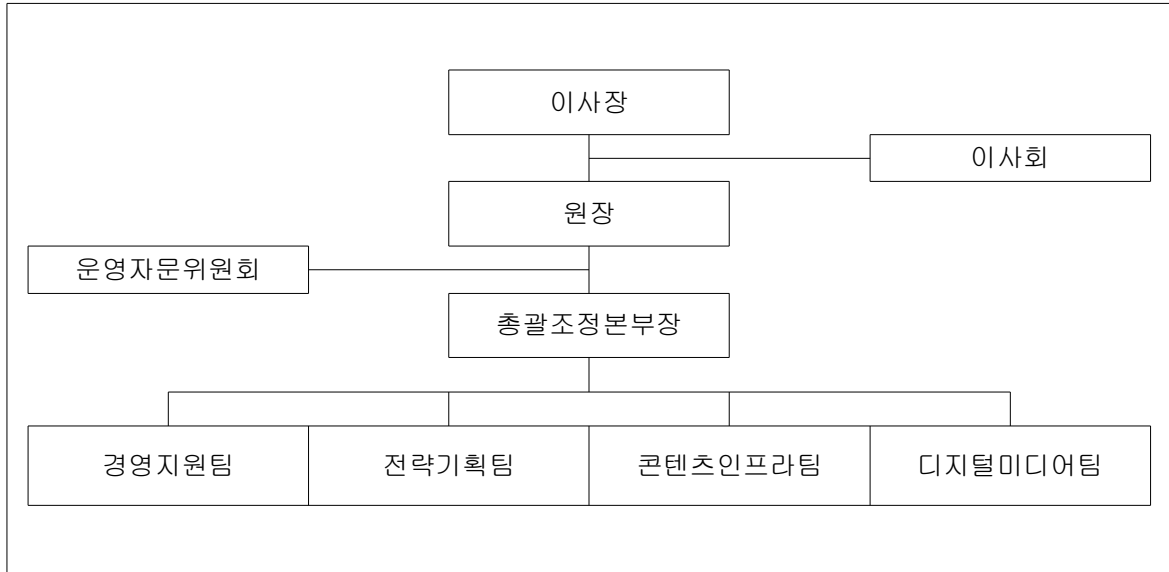
- '11. 12 : 법인설립(경상북도 허가, 법인등기 12.20)
- '13. 02 : 진흥원 청사 준공(부지 3,271㎡, 연면적 4,377㎡)
- '13. 12 : 라키비움(Larchiveum) 개관
- '15. 02 : 경북 콘텐츠코리아랩(CKL) 유치
- '16. 08 : 엄마까투리 TV시리즈 애니메이션 EBS 방영

○ 주요사업

-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활동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 문화콘텐츠산업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유치 및 교류·협력사업
- 영화·드라마 등 영상산업 지원사업
-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장 경북 지역문화 현황 및 실태

○ 조직 : 원장, 총괄조정본부장, 4팀



○ 운영인력 : 현원 22명(공무원 파견 포함 시 24명)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일반직	기능직	비고
정원	22	1	19	2	파견 2명 (도1, 안동1)
현원	22	1	19	2	

註) 1.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2017년 3월 현재 기준)

2. 정원 외 비정규직 9명 : 단기 외부수탁 사업 수행 인력 및 기간제근로자

○ 2017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출연금	1,473	운영비	2,155
보조금	3,543	보조사업	3,543
기타수입	100		
이월금	582		
합계	5,698	합계	5,698

(3)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 경북도 출연기관

○ 설립개요

- 법인설립일 : 1996. 12. 21(문화관광부 허가)
- 법인등록일 : 1996. 12. 26
- 자본금 : 104억 원
 - ※ 출자 1억 원(경북도), 출연 103억 원(경북도 28, 경주시 25, 문광부 50)
- 대표자 : 경상북도지사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경감로 614 보문관광단지내

○ 시설현황

- 부지 : 35필지, 564,270m²
 - ※ 경상북도·경주시 공동 소유 : 21필지, 533,278m²
- 건물 : 29동, 29,056m² (경주타워, 엑스포문화센터, 전시·공연장 등)

○ 주요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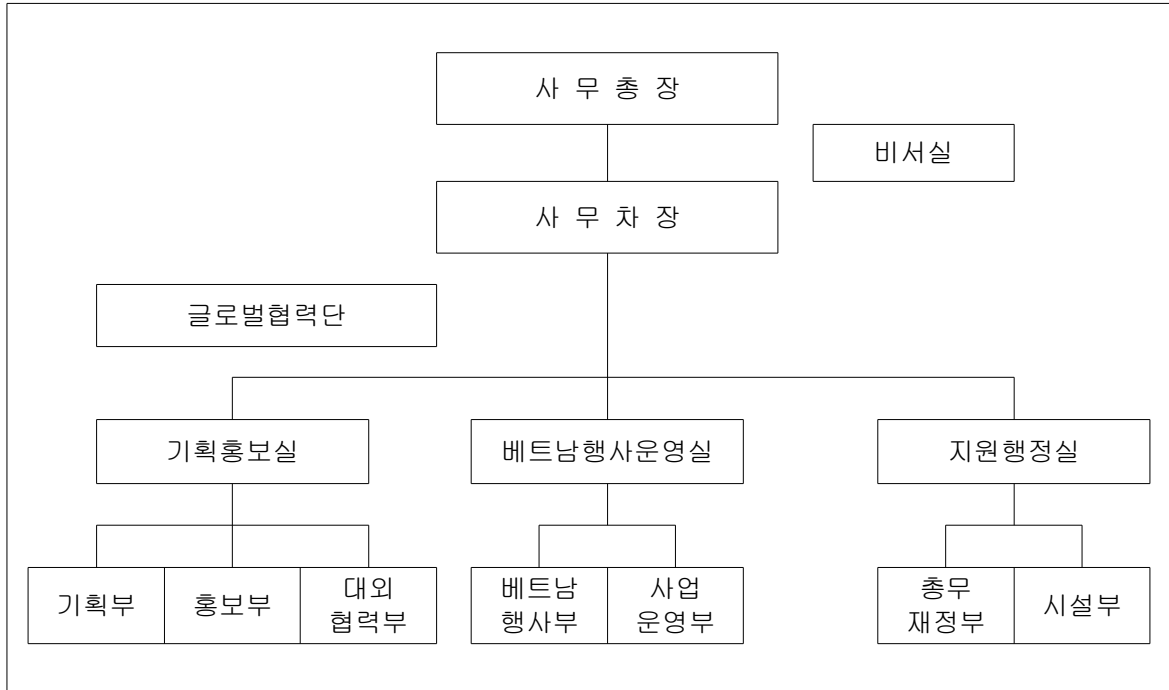
- '96. 3. 11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 '96. 6. 18 : 국무총리실에서 중앙시책사업으로 결정
- '96. 9. 17 : 문화엑스포 준비기획단 구성
- '96. 11. 8 : 경상북도재단법인문화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 제정
- '96. 12.21 : 법인 설립 (문화관광부 허가)
- '96. 12.26 :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허가 및 등기
 - ※ 98년 이후 다수의 세계문화엑스포 행사 개최

○ 주요사업

- 문화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 국내·외 문화엑스포 개최
- 역대 국내·외 문화엑스포 기록물 전시를 위한 기념공원 조성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의 상시개장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제4호의 운영을 위한 전시관, 미술관, 박물관, 영상관, 체험관 건립·운영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및 건축물 유지관리

제4장 경북 지역문화 현황 및 실태

○ 조직 : 1총장 1차장 1단장 3실 7부



註) 자료 : 문화엑스포 내부자료(2017년 3월 현재 기준)

○ 운영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임기제	일반직	기능직	무기계약	파견 공무원	비고
계	48	4	11	7	5	21	
재단법인	27	4	11	7	5	-	
경북도	14	-	-	-	-	14	
경주시	17	-	-	-	-	7	

註) 1. 자료 : 문화엑스포 내부자료(2017년 3월 현재 기준)

2. 기간제 근로자(6명) : 사무보조 2명, 술거미술관 4명(도슨트 2, 청소 2)

3. 4월 상시개장 시 운영요원(기간제근로자) 20여명 채용 예정

4. 용역근로자 : 경비 7명, 청소 3명

○ 2017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	예산액	비고
세입	목적사업수입	17,500	보조금, 기부금, 기타전입금
	목적 외 사업수입	300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이월금	4,009	이월금, 보조금 사용잔액
	계	21,809	
	수익사업	1,488	입장권사업, 휘장사업, 직영사업, 임대사업, 부대시설수익, 기타 등
	이월금	13,789	이월금
	계	15,278	
	합계	37,087	
세출	목적사업	11,358	인건비, 일반관리비, 엑스포공원 조성사업비, 솔거미술관 운영 등
	자본지출	132	자본지출
	보전지출	9	반환금 기타
	계	11,499	
	영업비용	25,288	인건비, 일반관리비, 공원상시개장, 세계문화엑스포행사 및 연계행사, 예치금 등
	계	25,288	
	예비비	300	예비비
	합계	37,087	

(4) 문화재연구원 - 경북도 출연기관

○ 설립목적

- 문화재 시/발굴 등 체계적 조사와 연구
- 출토유물의 고고학적인 자료보존 및 활용
-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전시

○ 시설현황

- 부 지 : 18,233m² (건물부지 11,393m²)
- 건물규모 : 3,161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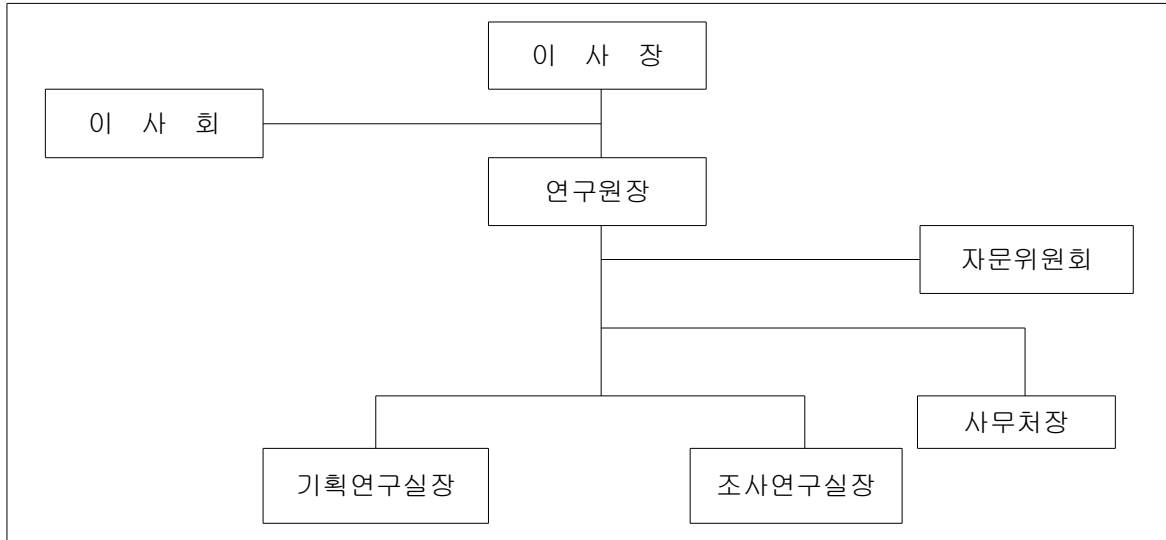
○ 주요연혁

- '97. 11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제정(도의회 '97.11.6)
- '97. 12 : 법인설립허가(문화재청)
- '98. 02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개원
- '08. 11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신청사 준공(부지 : 18,233m²)

○ 주요사업

- 문화유산(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를 포함한다)의 보호, 보존 관리
- 문화유산의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을 포함한 학술조사)·연구 및 자료 발간
- 문화유산의 보존 처리 및 수장 전시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조직 : 1처 2실 7팀



註) 자료 : 경북문화재단연구원 내부자료(2017년 3월 현재 기준)

○ 운영인력 : 현원 52명

(단위 : 명)

구분	계	일반정규직						기간제
		소계	원장	별정직	연구직	관리직	기능직	계약직
정원	57	57	1	1	48	6	1	
현원	52	50	1	1	41	6	1	2

註) 자료 : 경북문화재단연구원 내부자료(2017년 3월 현재 기준)

○ 2017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		세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영업수익	6,754	영업비용	9,569
전년도이월금	3,525	법인세	490
영업외수익	64	투자자산	97
		유형자산	182
		예비비	6
합계	10,343	합계	10,344

(5) 한국국학진흥원 - 경북도 출연기관

○ 설립목적

- 훼손·도난으로 멸실 위기에 있는 민간소장 기록관련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 및 보존과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

○ 주요연혁

- '95. 12 : 문화체육부의 법인설립 인가
- '96. 03 : 설치사무소 개소
- '01. 10 : 홍익의 집(본관) 개관
- '06. 06 : 유교문화박물관 개관
- '09. 01 : 경상북도 지원조례 제정(경북도 조례 제3071호)
- '15. 10 : 유교책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 '16. 05 : 한국의 편액,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 등재

○ 주요사업

- 훼손 또는 도난 등으로 멸실위기에 처해있는 민간소장 기록 관련 국학자료의 수탁사업
- 국학자료의 조사·정리를 통한 전통문화 보급
- 전통문화 교육실시 및 그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
- 국학자료관 및 유교박물관 운영
- 국학자료 및 연구결과의 국제교류
- 국학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국학연구 자료의 발간 및 보급
- 그 외, 위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조직 : 원장, 부원장, 1실 3부 1센터 1국 (부설 1원, 2관, 1센터)



○ 운영인력 : 현원 53명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직
정원	60	1	2	40	17
현원	53	1	2	35	15

註)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2017년 3월 현재 기준)

○ 2017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출연금 및 보조금	24,154	운영비	5,413
수탁사업	680	사업비	21,369
기타수입	1,948		
합계	26,782	합계	26,782

(6) 경상북도관광공사 - 경북도 지방공기업

○ 설립목적

- 경상북도의 역사·문화·자연·생태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 홍보하고 지역관광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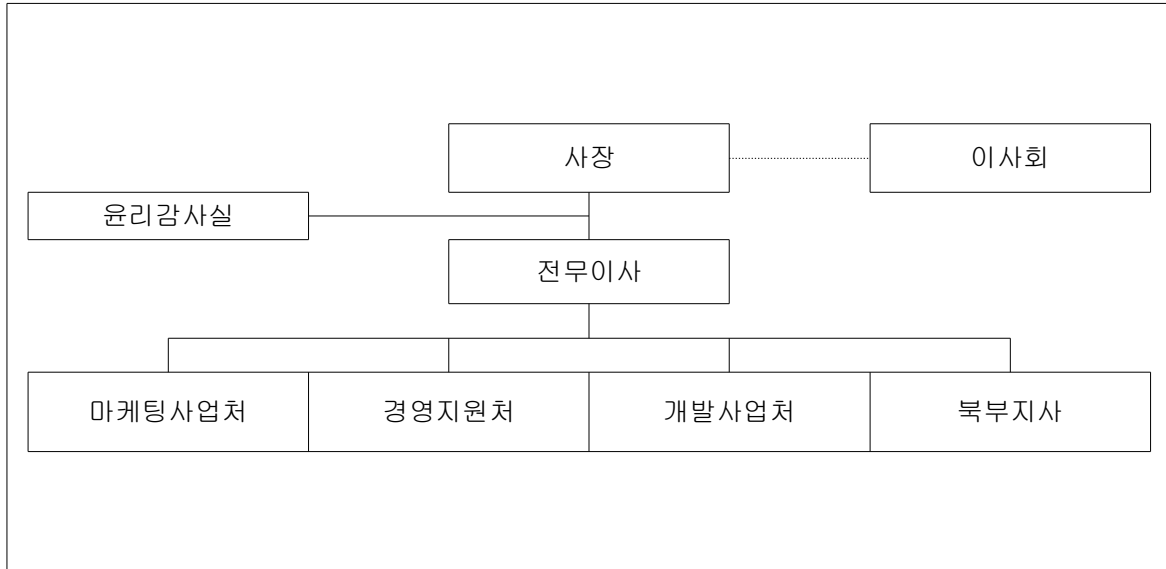
○ 주요연혁

- '11. 02 : 매각업무협약 체결(경상북도↔한국관광공사)
- '11. 11 :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11. 12 :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 출자계획 의결
- '12. 03 : 본 계약 체결(경상북도↔한국관광공사)
- '12. 06 :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 주요사업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조성 및 관리운영, 관련 인프라 시설 확충
- 관광축제·이벤트 등 기획 및 개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 도 단위의 통합 홍보·마케팅 및 관광안내시스템 운영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 관광 관련 연구조사, 관광산업 지원 및 컨설팅
- 회의·전시·컨벤션의 기획·유치 및 홍보
- 관광 관련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 도 및 시·군의 위·수탁사업 등
- 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 그 외 도 관광발전에 필요한 사업

○ 조직 : 사장, 전무이사, 3처 1지사



○ 운영인력 : 현원 145명

(단위 : 명)

구분	계	기관장	상임이사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고
정원	148	1	1	146	-	
현원	145	1	1	121	22	

註) 1. 자료 : 경북관광공사 경영공시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제외

○ 2016년 예산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사업예산	45,448	사업예산	32,714
자본예산	22,007	자본예산	32,030

(7)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 민간기관

○ 설립목적

- 문화관광부와 성주군, 성주교육지원청이 지역문화창달을 위하여 예술인들에게 제공한 창작스튜디오이자 주민들의 문화체험공간인 금수문화예술마을을 운영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입체적 문화체험의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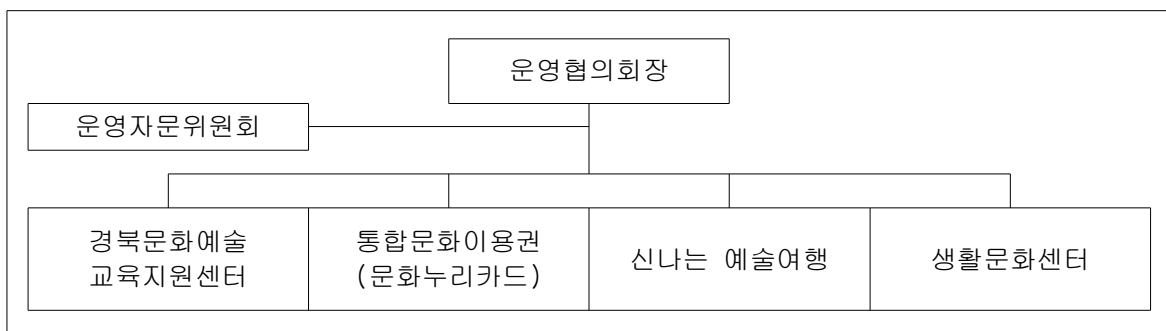
○ 주요연혁

- 2000년 02월 : 예술창작스튜디오(금수문예마을) 설치
- 2000년 04월 : 금수문예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공포 (성주군)
- 2000년 04월 : 금수문예마을운영협의회 구성 및 민간위탁협약 체결
- 2000년 04월 : 금수문예마을 개관
- 2012년 :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북문화바우처 주관처, 문화일자리사업 등 추진
- 2016년 05월 :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성주군 금수문화예술마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 주요사업

-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경상북도 지정)
- 경북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경상북도 위탁사업)
-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 성주생활문화센터 운영 (성주군 위탁사업)

○ 조직 : 4팀(각 사업별 1팀)



- 운영인력 : 14명
 -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8명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5명
 - 신나는 예술여행 : 1명
 - 생활문화센터 : 2명(신나는 예술여행, 통합문화이용권 각 1명 겸업)

○ 2017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분류	예산액	지원처	비고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사업	6,350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23개 시·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북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	300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3,492	문화체육관광부, 경북교육청,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강사 지원 (급여 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720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재교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80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재교부
신나는 예술여행	4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합 계	11,442		

제4장 경북 지역문화 현황 및 실태

2) 경상북도 문화관련 업무 현황(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통한 문화경북 위상제고

구분	업무내용	세부사업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및 문화산업화 연결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기반구축과 경북정체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학진흥원 자료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 제고 지역문화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구심점 역할 증대
	전통문화유산의 문화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국유사 역사문화벨트 조성 중부권 유교문화진흥지구 지정·조성
	인문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가 있는 날 내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한·중 유교인문교류 컨퍼런스 ‘문화가 있는 날’ 동참 분위기 조성
문화격차 해소 및 예술창작활동 지원	수요자·대상자별 맞춤형 공연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도립예술단 공연 경북예술제 개최(경북예총 8개 협회) 경북풍물대축제
	지역·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로 문화향유권 확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역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전문예술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종교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종교문화자원의 보존 및 효율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종교시설 활용 및 유교문화의 참된 가치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종교시설 활용 문화프로그램) 전통문화 계승사업
	종교문화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조성 동학예술제 지원
전통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문화적 가치 확산	전통문화자원 및 창작활동 지원으로 문화경북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국유사 목판사업 삼국유사 목판 콘텐츠 상품화 창작뮤지컬 제작지원
	공예문화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우수공예품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예품 각종 전시·판매지원 공예업체 인턴사원 지원사업 지역공예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 안동 무삼 활성화 사업
	코미디산업 발전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도 세계 코미디예술제 지원

○ 문화콘텐츠 성장기반 마련과 국제문화교류 강화

구분	업무내용	세부사업
도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체험 정책 추진	생활 속 문화 체험 확산으로 수요자 문화확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중심 문화정책(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경북예술마을 가꾸기) 지역문화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이용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립문화기반시설 확충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경북점자도서관 지원, 학교 내 마을도서관 지원 갤러리경북홍보관 운영지원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및 경북문화의 세계화 추진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콘텐츠코리아랩 구축 경북문화콘텐츠 정책포럼 개최 지역스토리랩 프로그램 육성지원
	세계문화엑스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개최 (베트남 호찌민시 일원)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크로드 선상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문화교류

○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을 통한 가치증진

구분	업무내용	세부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보존·관리 강화	문화재 체계적 보존관리로 문화유산 가치증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화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추진
	문화유산의 예방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운용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무형문화재 보존활용 및 전승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무형문화재 활동지원, 전수교육관건립
전통문화유산의 브랜드화 및 세계화 추진	종가문화의 보존·활용을 통한 계승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가문화 조사연구를 통한 인프라 구축 종가문장디자인 활용 문화상품 개발 종가포럼을 통한 종가문화 이해와 화합
	종가문화의 고품격 브랜드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가음식 산업화를 통한 한식의 세계화 종가 무지개밥상 개발(종가, 사찰음식)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속발굴 및 등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등재 대상 유산의 가치홍보 극대화 등재대상 신규발굴 및 지원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속사업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지역 역사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진왜란 역사기념공원 조성 금오서원 및 임고서원 주변정비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문화향유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유산 활용·홍보 활성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강화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찾기운동 내실추진으로 환수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및 환수여건 조성 국외 반출문화재 매입 적극추진

3. 문화예술활동 현황

1)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 현황

○ 경상북도의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으로 가입된 예술인으로 총 14개 예술분야 3,518명으로 전국 131,332명 중 2.7% 수준이다.

<표 4-9>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서울	5,832	10,069	562	289	1,367	2,329	6,829	1,920
부산	1,177	1,809	121	31	186	431	174	322
대구	785	2,060	41	44	159	277	102	331
인천	584	1,193	26	23	26	149	538	341
광주	688	1,850	51	46	52	229	85	352
대전	445	1,350	50	25	82	212	125	71
울산	402	834	12	155	76	71	21	253
경기	3,931	7,594	308	169	246	946	3,121	1,002
강원	680	798	46	62	21	229	90	95
충북	695	798	31	59	114	123	80	111
충남	495	1,052	48	29	39	135	98	286
전북	1,067	1,671	137	86	43	241	77	236
전남	615	1,115	43	32	8	135	44	125
경북	678	1,542	38	67	70	171	72	83
경남	874	2,000	39	41	56	185	68	135
제주	396	441	25	42	57	105	22	92
합계	19,381	39,393	1,582	1,200	2,853	5,970	11,578	5,870
구분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합계	
서울	2,386	8,167	1,965	3,374	456	3,772	49,317	
부산	247	458	52	33	11	985	6,037	
대구	171	486	23	19	11	563	5,072	
인천	285	422	128	248	25	160	4,148	
광주	118	259	55	17	10	346	4,158	
대전	129	277	13	30	6	304	3,119	
울산	84	150	4	5	1	131	2,199	
경기	926	2,423	900	1,713	532	1,203	25,014	
강원	79	324	15	40	18	477	2,974	
충북	72	407	29	21	13	158	2,711	
충남	62	255	19	41	32	343	2,934	
전북	128	382	18	25	5	635	4,751	
전남	59	237	9	16	23	537	2,998	
경북	62	370	13	18	42	292	3,518	
경남	160	514	11	22	42	405	4,552	
제주	26	95	20	19	16	208	1,564	
합계	6,364	15,744	3,548	5,840	1,488	10,521	131,332	

註) 자료 :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6)

2) 문화예술 활동현황

- 경상북도에서 이루어진 문화예술 활동은 전국 문화예술 활동 대비 3.1%,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활동 대비 8.5% 수준이며, 국악과 연극의 비율이 높은 반면, 양악과 혼합공연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경북 문화예술 활동 건수 및 비율

(단위 : 건)

구 분	시각 예술	공연예술						계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소계	
전국 합계	13,207	1,547	10,190	5,721	1,330	1,108	19,896	33,103
도 합계	4,428	693	3,622	2,419	466	432	7,632	12,060
경북	380	73	260	236	41	31	641	1,021
전국대비 경북비율	2.9%	4.7%	2.6%	4.1%	3.1%	2.8%	3.2%	3.1%
도 대비 경북비율	8.6%	10.5%	7.2%	9.8%	8.8%	7.2%	8.4%	8.5%

註) 자료 : 문예연감 20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3) 문화예술 관련 산업현황

- 도내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은 총 144개 업체에 66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조직형태별로는 개인사업체가 가장 많고, 사업체 구분별로는 대부분이 단독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다.

<표 4-11> 경상북도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합계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자영예술가	기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44 (665)	27 (361)	59 (163)	12 (14)	46 (127)
조직 형태별	개인	57 (93)	2 (3)	16 (28)	9 (11)	30 (51)
	회사 법인	6 (83)	1 (40)	1 (16)	-	4 (27)
	회사 외 법인	43 (411)	23 (312)	8 (50)	-	12 (49)
	비법인	38 (78)	1 (6)	34 (69)	3 (3)	-
사업체 구분별	단독	136 (607)	23 (317)	58 (160)	12 (14)	43 (116)
	지사	8 (58)	4 (44)	1 (3)	-	3 (11)
	본사	-	-	-	-	-

제4절 도민 문화향유 및 문화의식

1. 경상북도 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결과

○ 20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6)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전국 79.3% / 경북 68.2% (9개 도 중 7위)
-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 전국 7.6% / 경북 2.6% (9개 도 중 8위)
- 문화예술교육 경험여부

구분	전국(%)	경북(%)	순위 (9개 도 기준)
유아기 및 아동기	18.5	6.7	9위
청소년기	19.0	5.4	9위
최근 1년 내	11.5	5.2	8위

- 문화예술교육 보완점 : 내용이 알차져야 한다(35.3%), 강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24.6%), 수강비용이 저렴해져야 한다(21.6%)
- 문화예술활동공간 이용경험 : 전국 64.8% / 경북 43.8% (9개 도 중 9위)
-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경험 : 전국 5.5% / 경북 0.9% (9개 도 중 9위)

2. 경상북도 도민 문화의식 조사결과

○ 경상북도 문화정책발전 중장기 기본계획(경상북도, 2012)

- 경북도민
 - 문화생활 수준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54.5%)이 낮다고 응답함
 - 문화정책 및 문화행정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의견이 13%에 불과함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 부족)
 - 문화프로그램 유형은 체험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호함(44%)
- 전문가
 - 경북문화 정체성 및 문화정책에 대한 방향성 정립(지역성과 현대성의 조화를 통한 세계화)
 - 기존시설 활용을 극대화 하여 시설기능의 전문화 및 복합화

제4장 경북 지역문화 현황 및 실태

-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지역문화 전문가 양성 및 체계적 양성시스템 구축
- 자원간, 사업간, 시설간, 정부-지자체간, 민관 연계 협력, 문화교류 강화

○ 경상북도지역문화진흥5개년시행계획(경상북도, 2017)

- 경북도민

- 문화행정 발전을 위한 역점사항 : 민간 및 타기관 협력확대(36%), 전문성 제고(30.8%)
- 경상북도 문화발전을 위한 역점사항 :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30.8%), 문화시설의 확충과 정비(20%), 전문문화예술단체 육성(14%)
- 문화적 만족도 : 전반적으로 만족(31%), 보통(52%), 불만족(17%)


- 전문가

- 문화행정 발전을 위한 역점사항 : 민간 및 타기관 협력확대(44.7%), 전문성 제고(34.2%)
- 경상북도 문화발전을 위한 역점사항 : 전문문화예술단체 육성(27.5%), 문화교육기회확대(20.0%), 문화전문인력 양성(15.0%),
- 23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문화격차 해소방안 : 경북문화재단(시군 문화업무 총괄기관) 설립, 문화예술인 순회 및 소외지역 지원, 시군의 협력 및 문화콘텐츠 교류, 청년문화기획자 양성교육,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빙 등



제 5 장

경북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제1절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제2절 설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제3절 경북문화재단의 역할

제5장 경북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제1절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1. 지역문화의 개념

1) 정의

-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 즉, 지역문화라고 하면 지역에 바탕을 둔 문화를 의미하며, 한 사회나 집단을 특징할 수 있는 정서적, 지적, 정신적, 물질적 특징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지역민들의 현실적인 삶과 미래를 위해 기여하는 문화이다.

2) 기능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산업화에 따른 물질적 개발로 인하여 양산된 획일적 지역문화를 개성과 다양성이 함께하는 지역문화로 만들 때, 외부로부터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확보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창의적 지역문화의 분위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지식기반 경제체제에 따라 유형적 자산보다 무형적 자산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됨
- 개성 있는 지역문화는 지역정체성 확립에 기여
 -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풍습은 그 지역민이 서로 공유할 수

- 있는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여 지역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부여
 - 개성과 전통이 함께하는 지역문화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고양시켜 지역정체성 확립에 기여
- 지역민의 정서함양과 교육
 -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지역문화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지역모습을 담고 있음
- 따라서 지역문화는 그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애착심을 갖게 하고 지역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지역문화가 잘 정리되고 이를 발굴, 진흥 및 홍보할 경우 지역문화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동시에 지역을 사랑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 지역문화진흥의 필요성

- 지역문화진흥의 필요성은 국가중심의 문화정책에서 지역문화정책으로의 변화에 있는데, 과거 중앙집권적 통제에 의존하던 시기에는 문화예술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국가차원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중요시 하였으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 증대에 따라 지역중심의 문화예술정책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 지역문화진흥은 지역문화의 가치와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이나 문화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지역문화를 국내·외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지역문화자원의 매력과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포함한다.

- 이를 위하여 지역의 고유성을 표현하는 축제나 전통문화행사를 접목하거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 및 특산물을 개발하며, 잠재된 지역문화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다.
- 즉, 지역문화진흥은 그 지역의 독창적이고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적 등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전승하여 지역민들이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이나 문화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여 지역 속에 잠재된 지역문화의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 또한 지역민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감상하거나 각종 문화예술 행사 또는 문화프로그램 등 지역문화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민들이 지역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도와줄 수 있다.

3.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5호 라목 내지 마목에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역문화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2014년 7월 29일에 시행되었다.

-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으로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지역문화진흥기반 구축,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지역문화진흥정책

- 지역문화진흥이 잘 이루어지려면 관(官) 중심이 아닌 문화의 자생력과 자발성에 기초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고유의 풀뿌리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이 시대에 필요한 참된 삶의 문화를 만들 수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의 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그 지역의 정체성에 바탕을 둔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성공할 수 있다.
- 따라서 지역문화진흥은 추진주체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기에 각 지역에서 이러한 지역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중요하며, 또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민을 수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또는 프로그램 등 지역문화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절 설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경북문화재단 설립 필요성

1) 도민 문화생활 개선

-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여가와 문화예술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생활이 일반화되고 문화예술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경상북도 문화생활의 실태 검토결과 문화행사 및 교육 등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율이 전국 평균 및 다른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지역별 문화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경상북도는 문화적 기반 및 콘텐츠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문화생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문화정책이 도민들의 생활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행정과 현장의 연결고리의 미흡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생활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들이 자율적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예술활동이 기획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화예술활동을 민과 관의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조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즉, 창조성과 유연성, 형평성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정책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문화사업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전문기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문화사업의 일관성 및 체계성 확보

- 정부의 중앙집권적 문화행정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지역문화진흥과 관련된 법과 정책이 잇따라 수립되면서 문화자치라는 변화된 정책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을 권고하고 재단을 지역 문화융성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문화자치의 토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인식의 변화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을 통해 중앙부처 소관 지역문화사업의 대규모 지방이양과 지역협력형 사업의 확대로 지역별 문화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 정부 문화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타 지자체는 앞 다투어 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이미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지역문화진흥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상북도는 문화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하기관이 존재한다고 하나 실상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지원사업만 하더라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교육지원과 문화누리사업은 민간 문화예술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 또한 각각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등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파편적 구조이다.
- 문화정책 및 사업이 형평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지역문화진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파편적인 문화사업들을 일원화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3) 문화사업의 전문성 및 창조성 제고

- 공무원의 순환보직 및 종합행정으로 문화예술의 전문성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일부 업무는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단체의 변경이 가능하여 지속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 또한, 기존 관 주도의 문화정책 추진에 있어 상명하달식 조직체계와 추진체계의 경직성으로 창조적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으며, 제한적 예산확보 방안에 따른 한정된 예산 또한 문화사업의 전문성과 창조성 확보에 제약이 되어왔다.
-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경상북도 문화의식조사에서도 경상북도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및 타기관과의 협력 확대와 전문성제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4) 경상북도 지역문화의 형성 및 확산

- 경상북도는 3대문화권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엮는다면 경상북도의 우수한 지역 문화 형성이 가능하다.
-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도내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경상북도의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외부 협력관계를 통하여 경상북도 지역문화를 전파함으로써 경상북도의 문화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경북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1)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의 경쟁력이 매력적인 장소로서의 고유성과 독창성이 요구되고, 산업의 패러다임 또한 창조적 융합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도시와 산업의 발전요소로서 상상력의 기반인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있다.
- 일본의 가나자와시는 문화예술진흥을 바탕으로 도시경제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데, 예술창조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시민예술촌 내에 직인대학을 두어 생활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디자인산업 등 지역발전형 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전통산업을 보존해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경제적 효과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있다.
- 경상북도는 다양하고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도시성장을 이룰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지닌 지역이므로 경북문화재단으로 인한 지역의 문화적 역량강화는 문화산업의 발전 및 문화적 지역개발 등 지역경쟁력 강화로 확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민복지증진

-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경상북도의 문화예술교육 및 행사 참여경험이 전국평균 및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대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경상북도 도민들의 문화참여는 저조하다고 하나 사회 전반적으로는 문

화적 욕구 증대로 인하여 문화정책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문화정책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 문화재단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중앙기금을 유치, 다양한 문화 예술사업 추진이 유리함에 따라 문화재단의 설립으로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어느 한곳의 소외됨 없이 경상북도 전체에 문화예술 참여의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도록 할 수 있다.
- 즉, 문화재단의 설립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 및 동기부여로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방재정 확충 및 예산절감

- 타 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문화메세나사업과 후원활동사업, 문화예술프로젝트 실현을 위하여 대중의 소액기부를 유치하는 클라우드 펀딩, 공연의 가치 향상 및 수익사업 발굴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한 재원확보가 용이하다.
- 이와 같은 다양한 경로의 재원확보는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등 경상북도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상북도 문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각 사업별 공통경비(經費)의 중복지출을 제거함에 따라 경상북도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

제3절 경북문화재단의 역할

- 경상북도 지역문화의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지역문화진흥이 왜 필요한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재단이 왜 필요하고 문화재단을 통하여 발생하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먼저 지역문화진흥은 지역 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의 효용과 가치 극대화와 지역민의 문화적 혜택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정체성 확립, 지역민 정서함양에 기여하여 결국 지역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예술활동이 저조한 도민 문화생활의 개선, 문화사업의 일관성 및 체계성, 전문성 및 창조성 제고, 경상북도 지역문화의 형성 및 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본 절에서는 경북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경상북도를 비롯하여 문화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들과는 어떠한 역할관계를 정립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경북문화재단의 역할

1) 경상북도 문화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

- 경상북도는 ‘한국 속의 한국’이라고 할 만큼 우수한 역사문화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문화자원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전국 문화재의 약 20%를 보유한 역사문화 자원의 보고이다.

- 또한,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주시, 청송군, 청도군 등 도내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를 진흥하고자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우수한 문화가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간, 또는 문화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어 경상북도의 문화정체성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결국은 경상북도의 지역문화진흥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 요컨대 지역문화진흥이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라면 경북문화재단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도내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경상북도의 조화로운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외부 협력관계를 통하여 경상북도 지역문화를 전파하는 등 경상북도 문화진흥의 중심점을 주된 역할로 하여야 한다.

2) 정책수립자와 정책수혜자 간 순환연결

- 기존 문화정책의 한계점은 정책수립자와 정책수혜자 간의 다른 관점으로 인하여 정책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며, 현장은 정책의 수혜도가 낮은 등 정책과 현장이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 경북문화재단은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을 사업화하여 현장의 지역문화인들에게 효과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정책수립자에게는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현장과 행정을 연결하는 역할은 일반 도민들의 문화활동 참

여기회 확대로 이어지는데,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작활동이 콘텐츠가 되어 도민들의 문화 관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창작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문화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3) 지역 간,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 신도시와 신시가지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 지역개발사업은 개발 소외 지역에 대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상업, 문화, 교육, 복지 등의 기능 약화를 유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문화격차가 발생하였다.
- 신도시와 신시가지의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활발한 문화활동 참여를 지속하고 있는 도민이 존재하는 반면, 지리적 여건이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인하여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에 포함된 도민도 존재한다.
- 경북문화재단은 이러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비롯하여 문화나눔, 재능기부 등 복지적 차원의 문화사업들을 수행함으로써 문화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 또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수행에 있어 도내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활용, 여러 지역 및 계층의 공감 형성을 이끌어내고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광역적 차원에서 지역 간,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2. 유관기관과의 역할관계

- 문화재단은 지역민 및 전문가, 행정가 등을 연결하는 매개기구로서의 역할, 즉 시설/공간과 인력/자본을 연결함으로써 단순한 기금 분배의 역할이 아닌 네트워크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경북문화재단의 설립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체 간의 경쟁 및 갈등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지역 내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력적 관계의 도모가 필요할 것이다.

1)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 복잡해지는 문화행정과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문화재단이 행정편의를 위한 효과와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시설과 기관,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 위탁과 문화예술 지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그 역할이 다루어져야 한다.
-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은 장기적으로 문화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의 수립과 집행, 지역문화환경 조성 등과 같은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사업은 문화재단으로 이관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따라서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 기금의 운영 및 확충, 민간협력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조사연구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인 문화예술 진흥에 주력하여 향후 종합적인 문화예술지원기구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 경상북도 문화분야 출자·출연기관

- 경상북도 문화관련 출자·출연기관은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등이 있다.
- 기존 출자·출연기관은 각각 고유의 분야에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경북문화재단의 조직과 기구는 별도로 운영하여 독립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업무 및 기능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기관은 설립단계 또는 운영단계에서 통합 할 수 있다.
- 전문화된 분야에서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되 문화재단이 경상북도 지역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지원·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독립적 관계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의견대립과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각 기관의 내규 및 제규정을 검토하여 각 기관의 원장, 또는 기관 내 주요 인사 등을 문화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협력관계 구축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